Z - 26 - 2022

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

2022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- 제·개정 경과
 - 2022년 12월 리스크관리분야 표준제정위원회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 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2년 12월 3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Z - 26 - 2022

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도급에 따른 산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이 제정되어있으며,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은 '근로자 참여 및 협의'항목으로 재해예방을 지원하고 있다. 그러나 도급관리에서의 안전 관리 미흡이 지속제기됨에 따라 '중대재해처벌법'으로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강화되명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. 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확장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본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,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관리자, ISO 또는 KOSHA-MS 기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실무담당자 및 내부 심사원, ,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'안전경영 위원회'을 담당하는 행정관리인의 업무역량 증진에도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3.1 협의(체): 협의(consultation)란 결정 이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, 여기에 '일정한 체계를 가진 조직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, '-체'가 붙은 말이 '협의체'이다. 따라서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유지해 나가는 단체인 '협회(association)'와는 맥락이 다른 상황에 쓰이는 용어다.
- 3.2 참여: 참여(participation)란 조직 구성원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고, 참여에는 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존재하는 경우,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.

Z - 26 - 20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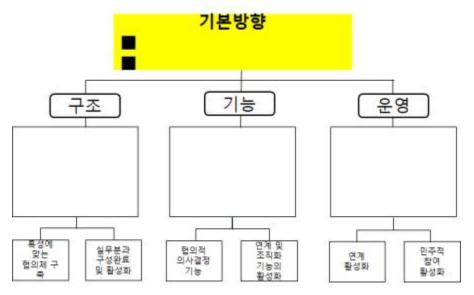
- 3.3 거버넌스: 거버넌스(goverance)란 공동의 관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.
- 3.4 중대재해: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"중대산업재해"와 "중대시민재해"로 구분되어 정의된다.
- 3.5 도급과 도급인: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,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정의된다.
- 3.6 수급인: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정의된다.

4. 협의체 구성 및 운영

4.1 협의체 운영 매뉴얼 작성

어떤 목적으로 구성되든 협의체는 운영 매뉴얼 작성을 통하여 출발하며, 매뉴얼은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의 기본원칙, 협의체가 기능해야 할 기본사항,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됨이 바람직하다. 협의체 개요, 협의체 구조, 협의체 기능, 협의체 운영으로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다.

- 4.1.1 협의체 개요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 - (1) 협의체 구성의 목적을 밝힌다. 필요하면, 법적 근거도 제시한다.
 - (2) 매뉴얼의 기본원칙과 중요 사항 및 기본 방향(구조, 기능, 운영)을 밝힌다.



<그림 1> 협의체 기본 방향

- 4.1.2 협의체 구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 - (1) 대표 협의체 구성의 원칙과 위원의 구성 방법과 선출방식을 설명한다.
 - (2) 위원의 임기를 설명한다.
 - (3) 실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면, 이에 관한 구성 방법, 선출방식, 임기를 설명한다.
 - (4) 실무 분과 구성이 필요하면, 이에 관한 구성 방법, 선출방식, 임기를 설명한다.
 - (5) 임원의 역할을 설명한다(표-1).

<표 1> 협의체 임원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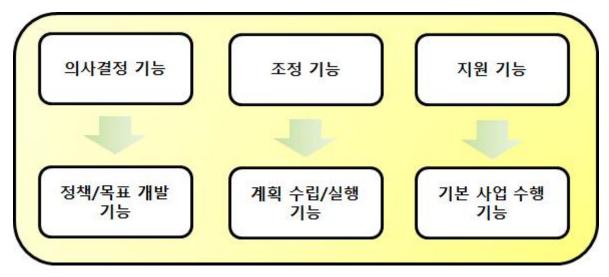
임원	역할
대표협의체 위원장	○ 협의체 운영의 전반적 관리 ○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진행 ○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○ 협의체 대표로서의 외부활동 ○ 분과운영 총괄 점검
대표협의체 간사	 ○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행정실무 담당 ○ 전산입력의 확인, 기록, 보고 ○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기록의 취합과 관리 ○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연락사무 총괄 ○ 협의체 관련 비용의 관리와 보고 ○ 실무협의체 간사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체에 전달
실무협의체 위원장	 ○ 실무분과장 및 실무팀장 회의 주재 및 실무분과 간의 의견 수렴, 조정 ○ 실무협의체의 의견을 협의체에 전달 또는 관련 안의 상정 ○ 실무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협의체에 보고 ○ 실무분과(팀) 단위로 해결되지 않는 서비스 연계 협력방안 모색 ○ 지원 인력의 수급 및 교육에 대한 건의, 실무분과별 배치 조정
실무협의체 간사	○ 실무분과 활동관련 기록의 관리 및 보고○ 실무분과간 업무 조정 및 활동 모니터○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 개발 추진

4.1.3 협의체 기능을 기재한다.

- (1) 기능의 원칙을 설명한다.
 - (가) 협의성: 협의체의 기능은 목적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역할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한 민주적인 협의의 과정을 지향한다.
 - (나) 연계성: 협의체 활동 중 기존 경영활동과의 연계 및 조정이 중요하다.

Z - 26 - 20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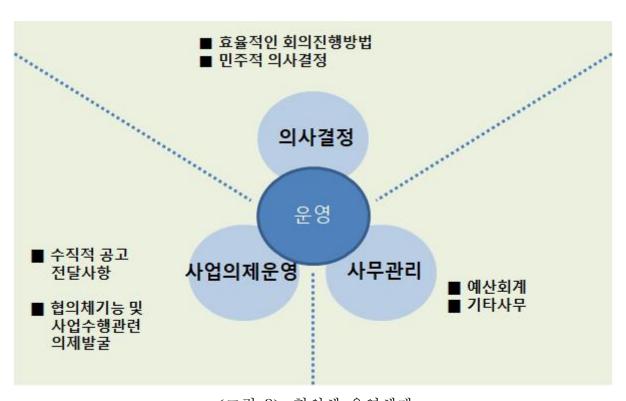
- (다) 민주성: 협의체의 모든 권한과 활동은 '최고 경영자의 위임'을 받은 것이며 이는 협의체 활동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실행시켜갈 때 본래 기능수행이 의미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.
- (2)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.
 - (가) 의사결정의 기능은 주로 대표협의체의 역할이다.
 - (나) 조정 기능은 협의체의 실제적인 기능으로 인적 조정, 갈등 조정, 자원 연계조정의 기능으로 구분한다.
 - (다) 의사결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함으로써 협의체 사업 진행의 문제와 방향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우선으로 구축한다.
 - (라) 중앙정부 및 관할기관 등에서 전달되는 상위(의무)정책에 대하여 대표협의체 중심으로 심의권을 갖고 정책/목표를 검토한다.
 - (마) 계획수립과 관련한 총괄기획, 소요 인력 및 자원조사, 세부 사업의 결정 및 협의 등을 진행하여 조직에 맞는 계획수립을 주도한다. 또한, 수립된 계획의 연차별 시행 및 변경. 수정사항을 점검한다.
 - (바) 총괄논의를 기본 사업 중심으로 실행 측면에서 기능해 나간다.



<그림 2> 협의체의 주요 기능

Z - 26 - 2022

- 4.1.4 협의체 운영을 기재한다.
 - (1) 기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 및 집단 의사결정 방법, 관련 영역과의 연계, 타위원회와의 조정, 안건 및 사업 운영, 기타 사무관리 등의 영역을 다룬다.
 - (가) 회의는 안건이 제시될 때 수시로 열릴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는 대표협의체는 분기당 1회(연 4회), 실무협의체는 두 달에 1회(연 6회) 정도로 추진할 수 있다.
 - (나) 의사결정의 과정은 문제분석, 대안 개발, 대안 선택의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.
 - (2) 운영 원칙을 설명한다. (4.2항 참조)



<그림 3> 협의체 운영체계

4.2 협의체 운영 원칙

이상적인 협의체의 의미 구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원리를 포함한 주요 원칙들이 있다. 일반적으로 협의체가 구성, 운영되는 과정에 지켜져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Z - 26 - 2022

- 4.2.1 공개성과 중립성: 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도록 적절한 구성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.
- 4.2.2 참여보장: 조직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한다.
- 4.2.3 대표성: 협의체 운영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4.2.4 균형: 협의체 운영위원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 특정 부서나 지향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4.2.5 실무적: 협의체 운영은 실무자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.
- 4.2.6 거버넌스 지향: 거버넌스에서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.
- 4.2.7 의사소통 다양화: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. 수평적, 수직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의체의 성격을 부각시켜야 한다.

Z - 26 - 2022

4.3 협의체 기본모형

대표협의체

[협의체 기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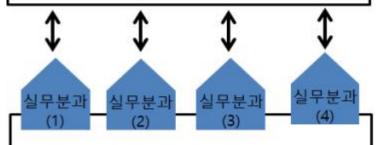
- -혐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
- -전반에 대한 논의 협의 결정
- -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체 내 하부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달
- -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



실무협의체

[실무협의체의 기능]

- -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안을 협의, 상정
- -실무의 현황 점검
- -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
- -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



[실무분과의 기능]

- -분야별 연계방식의 논의
- -성과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
- -협의된 안을 실무협의체에 전달

<그림 4> 협의체 기본모형

Z - 26 - 2022

5.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

5.1 협의체 적용 법규

5.1.1 안전보건 위원회(제 24조)

- (1)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"산업안전보건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(가)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
- (나)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- (다)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에 관한 사항
- (라)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
- (3)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(4)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(5)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, 이 법에 따른 명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제2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·의결해서는 아니 된다.
- (6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Z - 26 - 2022

(7)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5.1.2 노사협의체(제 75조)

- (1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(이하 "노사협의체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·운영할 수있다.
- (2)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- (3)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(4)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 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(5)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- (6) 노사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·근로자 및 관계수급인·근로자 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(7)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산업안전보건위원회"는 "노사협의체"로 본다.

Z - 26 - 2022

5.1.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(제 64조, 시행규칙 제79조,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2조)

(1) 제 64조

- (가)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
- ② 작업장 순회점검
-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
-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
-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- ⑥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
- (7) 작업 장소에서 화재·폭발, 토사·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
- ⑧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
- (나)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.
- (다)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작업장 순회점검, 안 전보건교육 지원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(2) 시행규칙 제 79조

- (가)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(이하 이 조에서 "협의체"라 한다)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.
- (나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.
- ① 작업의 시작 시간
-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
-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

Z - 26 - 2022

- ④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-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
- (다)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 야 한다.
- (3)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2조)
 - (가) 안전관리 중점기관이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·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· 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5.2 기본모형 확정

- 5.2.1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조직의 규모, 위치, 생산 제품 등의 여건을 고려한 기본모형을 확정한다.
- 5.2.2 사업장이 여럿인 대규모 조직의 경우는 대표협의체, 사업장별 실무협의체로 구분한다.
- 5.2.3 실무분과는 안전분과, 보건 분과, 거버넌스 분과, 지역사회분과로 구분한다. 필요하면, 지역사회 분과는 거버넌스 분과로 통합될 수 있다.
- 5.3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사항
- 5.3.1 조직은 안전보건 경영의 개발, 기획, 실행,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조치에 협의 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,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- (1) 협의 및 참여에 필요한 메커니즘, 시간, 훈련 및 자원을 제공
 - (2) 안전보건 경영에 관련된 정보에 적시 접근성을 제공
 - (3)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참여에 대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결정하고 제거하며,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의 최소화. 여기서 방해물과 장애물은 근로자의 참여 또

Z - 26 - 2022

는 제안에 대응 실패, 언어 또는 해독력 장애, 보복 또는 보복 위협, 근로자 참여를 방해하거나 처벌하는 방침 또는 관행이 포함된다

- 5.3.2 협의체는 비관리직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.
 - (1)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사항
 - (2) 안전보건 방침 수립 사항
 - (3) 조직의 역할, 책임 및 권한 부여 결정 사항
 - (4)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 결정 및 안내 사항
 - (5) 안전보건 경영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사항
 - (6) 외주처리, 조달 및 계약자에 대한 적용 가능한 관리 방법 결정 사항
 - (7) 모니터링, 측정 및 평가할 필요 대상의 결정 사항
 - (8) 심사 프로그램을 계획, 수립, 실행 및 유지 사항
 - (9) 지속적 개선 관련 보장 사항
- 5.3.3 협의체는 비관리직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.
 - (1) 협의 및 참여 메커니즘 결정 사항
 - (2) 유해 · 위험요인 파악 및 리스크와 기회 평가 사항
 - (3)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의 결정 사항
 - (4) 역량 요구사항, 훈련의 필요성, 훈련과 훈련 평가의 결정 사항
 - (5) 의사소통의 필요 대상 및 의사소통할 방법의 결정 사항

Z - 26 - 2022

- (6) 관리 수단 및 그 효과적인 실행 및 활용을 결정 사항
- (7) 성과 평가 및 사건 및 부적합의 조사와 시정조치의 결정 사항
- 5.4 협의체는 지역사회 포함 외부 이해관계자(언론, 협력업체 등)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.
- 5.4.1 안전보건 방침 수립 사항
- 5.4.2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 결정 및 안내 사항
- 5.4.3 성과 평가 및 사건 및 부적합의 조사와 시정조치의 결정 사항

Z - 26 - 2022

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2. 12. 29.

○ 개정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
○ 개정사유 : 가이드라인 고도화

○ 주요 개정내용

- 1. 목적 변경

- 2. 적용범위 변경

- 3. 용어의 정의 추가